

지원제외항목

-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**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미용·성형, 특·1인실 이용료, 간병비, 요양병원 의료비,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**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.
- 다른 법령에 따라 **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** 명목으로 급여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·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
 - * 제3자로 인한 구상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(실손형)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**민간보험금(실손형)·금품**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

유의사항

- **환수조치**: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, 재산,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, 지원 후 중복(부정)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(타 의료비 지원 등).
- **공공재정 제재부과금**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(신고)할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~500%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

구비서류	발급기관
•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첨부)	국민건강 보험공단
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(환자용, 가구원용) 각 1부	
•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	
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(환자기준 발급)	행정 복지센터
•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	보험회사
① '내보험찾아줌' 보험내역조회결과 1부	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
② '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(크레딧포유)'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	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
• 진단서 1부	
• 입(퇴)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※ 진료 기준에 입원일 확인 시 재정 활용율	
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	요양기관 (병원)
•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	

※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가능함



보건복지부
보건복지상담센터
상담센터 12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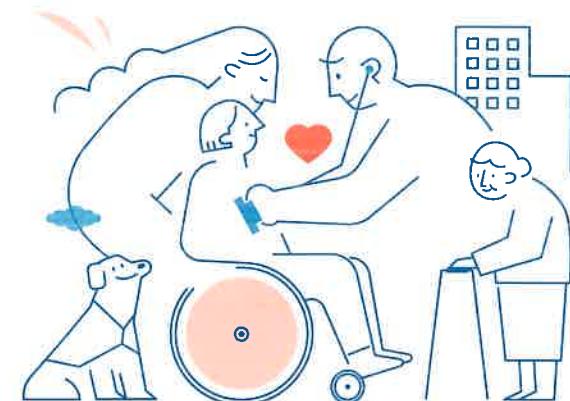


h-well
국민건강보험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
<http://www.nhis.or.kr>
고객센터 1577-1000
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
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!
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


본 리플렛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'23.1.1.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'22.12.31.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* 질환 기준 확대는 '23.3.28.

지원한도 상향 기준은 '23.5.9.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

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**의료비의 일부를 지원**하는 사업입니다.

신청대상
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,
선정기준(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)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
질환기준

입원, 외래 구분 없이 **동일 질환** 진료시 지원

※ 질환특성(의료적 필요성)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
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진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
신청방법 및 기한

· 신청방법

환자(또는 대리인)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· 신청기한

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(토·공휴일 포함) 이내

※ 다만,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
· 구비서류



2

신청 대상자 기준

소득 및 재산기준

·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* 100% 이하 중심

* 기준중위소득 :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구분

· 재산기준 :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

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

(월 기준 금액 이하, 단위 : 월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직장 가입자	75,390	125,150	161,230	194,680	230,280
지역 가입자	19,450	72,270	126,010	154,270	196,240

※ 보수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(피부양자)는 보수와 소득을 보험료로 흰산하여 합산

●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25,15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됨

의료비 부담수준

소득 구간별 **본인부담의료비 총액***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가능

소득 구간	의료비 부담수준	지원비율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	80%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(1인 가구) 120만 원 초과 (2인 가구 이상) 160만 원 초과	70%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% 초과	60%

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?

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(*뒷면 참고*)

3

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안내

지원범위

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~80%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

지원금 계산법

[본인부담의료비(예비·선별급여, 병원 2·3인실 입원료 등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)-(지원제외항목 +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실손보험금 등)] × 50~80%

● **지원일수** :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(투약일수 제외)

● **지원금액** :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

개별 심사

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
●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
●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

세부사항 문의

● 보건복지상담센터(129, www.129.go.kr)

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(www.nhis.or.kr)